

- 한국 검찰은 P2P를 통해 파일을 교환한 이용자를 직접 기소하는 대신 소리바다라는 ISP를 저작권접권 간접 침해로 기소한 상태이며, 민사가 처분 결정에 의해 소리바다 서버의 폐쇄조치가 행해짐.

- 그러나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해 P2P 음악 파일 교환이 종식되거나 음반업계가 기존의 마케팅 방식으로 상황을 누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전무하다시피 함. [관련 자료: “냅스터 소송’ 그 이후”, CLIS Monthly 2002-02호]

- 이런 상태에서 현행법의 적용에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유통체제와 이에 맞는 법질서를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바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요구됨.

인터넷접속 서비스업체에 대한 원천봉쇄 요청

○ 주요내용

- 한국음반협회가 소리바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‘Winmax’ 등 외국 P2P(개인대개인) 서비스 사이트와 국내 P2P 사이트에 네티즌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(ISP)에 원천봉쇄 요청 예정.

- 7월 31일 소리바다 폐쇄후 국내 네티즌들이 미국업체가 서비스중인 P2P 서비스 Winmax에 몰려, 소리바다 폐쇄의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되어, 한국음반협회가 대응책을 마련.

- 대응방안은, 8월 19일 미국 대형음반사들이 중국의 P2P 사이트인 ‘Listen4ever.com’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서, AT&T, Cable & Wireless USA, Sprint Corp 등 미국내 ISP업체들이 자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Listen4ever 사이트를 넘나드는 인터넷통신을 봉쇄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신청한 사례. 즉 국내 ISP업체인 KT나 하나로 통신 등에 미국 윈맥스 사이트에 대한 국내사용자들의 접속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임.

○ 분석

- 미국의 Listen4ever 사례의 경우, 단지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영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를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.

- 즉, 그 사이트가 미국의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,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으며, 중국음악은 거의 없이 미국음악작품에 집중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임.

- 그러나 Winmax의 경우, 한국의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작성된 것도 아니며 한국음악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므로, 한국법원이 개입하여 봉쇄할 근거가 박약함. 즉 한국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국내의 ISP업체가 Winmax 사이트를 오가는 인터넷흐름을 차단하게 된다면, Winmax 사이트에서 한국음악이 아닌 미국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일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.

- 음반제작자들은 음반판매의 부진과 이익의 감소가 음악파일의 공유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, 온라인상의 배포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디지털음악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, 소송제기 움직임도 이러한 사업확대전략의 하나임.

- 저작권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들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,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제품이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 볼 때, 미국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저작권보호방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 산업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과급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. 또한 저작권보호를 위해 강구하는 방안이 소비자들의 권익침해를 야기시키거나 인터넷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* 참조기사

“Company Fights Spam with Copyright, Trademark Law”, Reuters news, August 19, 2002.

한겨레신문, 8월 21일 수요일.